

□ 처분요구 사항 일람표

연번	관련기관	지적내용	처분요구				비고
			처분 종류	신분상 조치	재정상 조치		
					종류	금액(천원)	
1	서울시설공단	실비성 장려금의 총인건비 미반영 등 부적정	주의요구	-	-	-	

감사위원회

주 의 요 구

제 목 실비성 장려금의 총인건비 미반영 등 부적정

관계기관 서울시설공단

내 용

서울시설공단에서는 예산운용계획¹⁾에 따라 부서별 실비성 장려금을 편성하여 각 부서별로 직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.

1. 실비성 장려금의 총인건비 미반영

「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」 및 「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」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는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총인건비 항목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며,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도 총인건비 예산 대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한 인상을 범위 내에서 설립 자치단체장이 최종 결정한 인상을 적용하여 편성하여야 하고,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총인건비 인상을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있다.

또한 위 지침에 따르면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총인건비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예산 과목 중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편성하여 부서별 실비성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더라도 해당 장려금이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총인건비에 포함시켜 관리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서울시설공단은 2019년 기준 (붙임) “부서별 실비성 장려금” 45개 항목 중 4개 항목²⁾을 제외한 ○○○○○○경비 등 41개 항목의 실비성 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총인건비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 실비성 장려

1) 예산운용계획 붙임 : 부서별 실비성 장려금

2) ○○○○본부·○○실·○○○○○실-*****금, ○○○○○처-**** **비, ○○○○○○처-**** **비, *****비]

금이 인건비 인상률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.

2. 자체규정 없이 실비성 장려금 지급 부적정

「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」의 지방공기업 유형별 세부 예산편성기준 시설(환경·경륜)관리공단 부분에 따르면 인건비는 공단 「보수규정」 및 「연봉제규정」에 의해 계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, 부서별 실비성 장려금 중 인건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항목의 경우 「보수규정」 및 「연봉제시행규정」에 근거를 두고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.

또한 「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」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편성 근거를 기관별 복리후생규정에 명문화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복리후생규정에 명문화하여 편성 근거를 마련한 후에 복리후생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서울시설공단은 「복지후생규정」 제7조에서 ○○○장려금에 대하여 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고 지급대상인 ○○○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,

[붙임] “부서별 실비성 장려금 현황(2019년)”과 같이 ○○○장려금을 제외한 ○○○○○○비 등 나머지 장려금에 대해서는 공단 내부 규정에 지급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매년 이사장 방침 격인 예산운용계획만을 근거로 하여 지급하고 있다.

조치할 사항

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

- 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실비성 장려금을 총인건비에 포함하지 않고 예산 편성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,
 - ② 각종 수당, 복리후생비 등을 편성·지급하면서 「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」, 「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」 등 상위 지침에 따라 공단 「보수규정」, 「복지후생규정」 등 내부규정에 규정 한 후 명시적 근거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(주의)

【불임】 부서별 실비성 장려금 현황(2019년)

(단위 : 천원)